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검토필: 26-00930-634 (심의일: 2026.09.08)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연금저축계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연금저축계좌의 핵심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연금저축계좌의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바보호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

◇ 연금저축은 일정요건 충족 시 ①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5.5~3.3 또는 퇴직소득세의 50~70%,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1]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금수령**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것임)

1)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연금저축의 운용수익 ☞ 5.5~3.3% 적용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50~70% 적용

1. 세액공제 :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에서 13.2%[1] 또는 16.5%[2] 세액공제율 공제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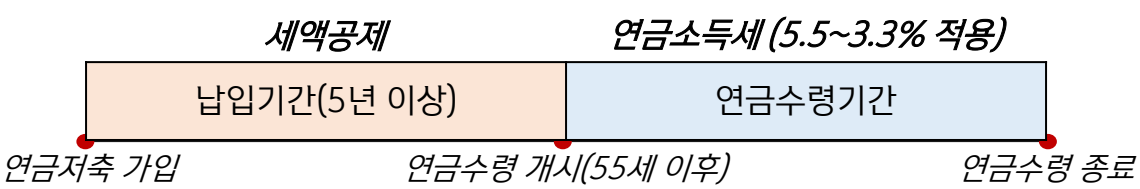
2. 연금수령 요건(연금소득세 적용)

① 가입 후 **5년 경과**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

*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5년 경과요건 미적용

②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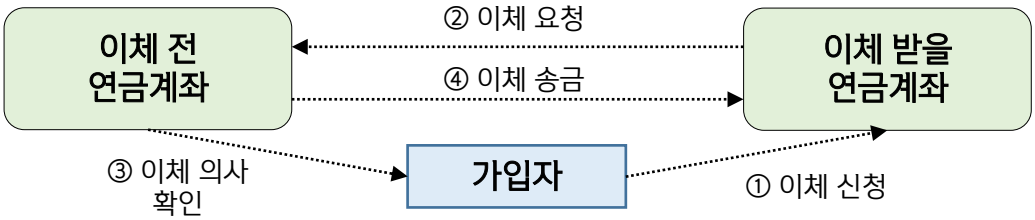


◇ **중도 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연금外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1]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5.5~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세 적용대상 :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



◇ **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이체 시**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가 제한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1] 또는 16.5%[2] 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및 수령 한도	▪ 연금 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수령개시, 매년 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 외 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 (연금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 ▪ 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단, 비거주 외국인 불가) ▪ 납입한도 : 일반 납입액 1,800만원 + 만기 ISA 계좌 내 금액 + 주택차액 + 부동산차액 (주택·부동산 합산 1억원)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 당해 연도 납입액의 13.2%[1] 또는 16.5%[2]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 또는 가입서비스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및 계좌승계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단,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가 제한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유의사항(계속)]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증권사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 (~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적용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①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위험등급

-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운용지시 하는 상품에 따라 본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 편입상품별 투자위험등급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필요)
-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퇴직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좌 내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50~70%를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상담센터(1588-0365) 및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sec.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담당부서 :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 1588-1122)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 이 설명서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연금저축계좌
-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2. 연금저축계좌 가입 및 납입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계좌 종류</td><td>▪ 연금저축계좌 : 자본시장법(§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 중개계약</td></tr>
<tr><td>가입 대상</td><td>▪ 제한 없음</td></tr>
<tr><td>납입 한도</td><td>▪ 연간 1,800만원[1] + ISA 만기계좌의 전환 금액[2] + 주택차액[3] + 부동산차액[4]
1) 全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 연금저축계좌 합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고령 가입자가 주택거래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주택차액과 합산 생애 누적 1억원 한도)
※ (참고)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가능
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td></tr>
<tr><td>세액 공제</td><td>▪ 연간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 + ISA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table>
<tr><th>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th>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th><th>세액
공제율</th></tr>
<tr><td>5,500만원 이하
(4,500만원)</td><td rowspan="2">600만원</td><td>16.5%</td></tr>
<tr><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td><td>13.2%</td></tr>
</table>
1) '22년 이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300만원 또는 400만원
2) '23년 이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600만원으로 인상</td></tr>
</table>

3. 연금저축계좌 운용 및 이체

구분	내용
운용방법	▪ **연금저축계좌** : 가입자는 계좌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 - 연금저축 전용펀드(종류형 펀드의 연금저축계좌 전용클래스 포함) 및 ETF(인버스 레버리지는 금지), 상장리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상장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상장 수익증권에 한하여 편입가능
보수 및 수수료	▪ 개별 연금저축계좌 약관, 운용상품별 투자설명서 및 가입서비스 약관을 참고
계좌이체	▪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 - 서로 다른 종류(신탁, 펀드, 보험)간의 이체도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단,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가 제한됩니다. ① 연금계좌('01.1월 이후 개설)에서 타 연금저축계좌('13.3월 이후 개설)로의 전액이체 ② 연령이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1]이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IRP)로 전액이체 ③ 연령이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1]이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 ④ 개인형IRP에서 개인형IRP로의 전액이체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5년 경과요건 미적용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 -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함 -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

4. 연금 수령 및 인출

구분	내용
연금수령	▪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및 **가입기간 5년 경과** *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5년 경과요건 미적용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연금수령 가능**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 ▪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이란 **연금수령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에 해당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1 - \text{연금수령연차}^{2)})} \times \frac{120}{100}$ 1) 연금저축 신탁펀드 : 기준가 x 누적좌수 2)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중도인출</td><td>▪ 일반적인 경우 :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하나 ☞ 연금외 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 연금수령으로 간주
- 신청시기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청
-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table>
<tr><th>부득이한 사유</th><th>인출한도</th></tr>
<tr><td>천재지변</td><td>X</td></tr>
<tr><td>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td><td>X</td></tr>
<tr><td>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td><td>O[1)]</td></tr>
<tr><td>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td><td>O[1)]</td></tr>
<tr><td>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td><td>X</td></tr>
<tr><td>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td><td>X</td></tr>
</table>
1) 아래 3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ㄴ)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x 150만원
(ㄷ) 200만원</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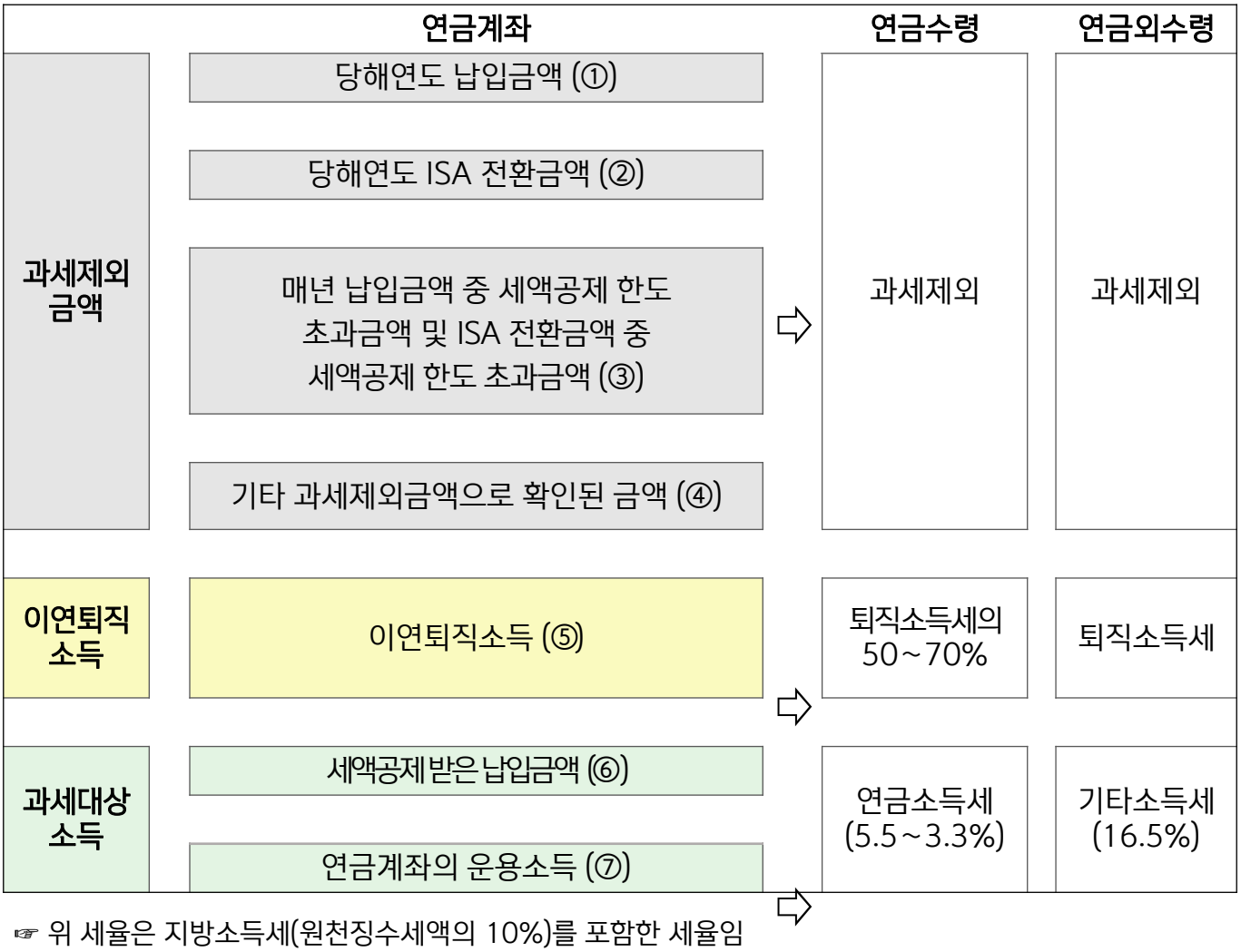
5. 적용세제

① 연금저축계좌를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 대비 고율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② 연금저축계좌의 **자금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가입자는 연금수령 및 자금 인출 전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자금인출 순서</td><td>▪ ①과세제외금액 → ②이연퇴직소득 → ③과세대상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
※ (참고)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
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ISA 전환금액 제외)
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ISA 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된 금액
③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600만원)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④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td></tr>
<tr><td>연금수령</td><td>▪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
▪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
* 단,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시 60% / 20년 초과 시 50%
▪ 과세대상소득 : 연금소득세(3.3%~5.5%) 적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확정형연금</th></tr>
<tr><td rowspan="3">나이
(연금수령일 현재)</td><td>70세 미만</td><td>5.5%</td></tr>
<tr><td>80세 미만</td><td>4.4%</td></tr>
<tr><td>80세 이상</td><td>3.3%</td></tr>
</table>
*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퇴직금 등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td></tr>
</table>

구분	내용
연금 외 수령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100%** 부과 ▪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세 16.5%** 적용

<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6. 가입자 유의사항

①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개별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② 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투자상품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담당부서 :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 1588-1122)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상품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진행절차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며,

② 회사는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른 예외 가능) 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주의사항 :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자료의 열람 요구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절차

① 금융소비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

②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6영업일**"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③ 회사는 '6영업일'이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단,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성 상품 :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

- 대상상품 : 모집형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신탁(금전신탁제외), 고난도 금전신탁
- 효력발생 :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 서면등")를 발송한 때

·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받은 금전, 재화등을 반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회사가 부담)

[설명의무이행 확인]

본 **연금저축계좌**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한투자증권 _____**지점(센터)** **☎:** _____

직위: _____ **직원명** _____(서명)

※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상에 사용된 금융용어 중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QR코드**를 찍으세요. **금융감독원 FINE** 에서 제공하는 **금융용어사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